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3월 10일

나. 발 의 자: 최인순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5년 3월 20일

라. 상정일자: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3. 2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최인순 의원)

가. 제안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 중 본 조례에 미 반영된 사항을 명시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지원계획 수립)제1항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제2항은 같은 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규정함
 - 안 제6조(지원사업)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함
 -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은 한부모가족 지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는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에 근거하여 한부모가족의 복리를 증진하고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2017. 6. 1.)되었음.
 - 현재 영등포구는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구비 사업은 없으며, 국·시비 사업으로만 추진 중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제2항(시책 수립·시행 책무)이 재량에서 기속으로 개정(2018.01.16.)된 사항을 반영하여 ‘영등포구 한부모 가족지원계획 수립’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자조사 및 가족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범위에서 적절히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8
------------	-----

발의연월일: 2025. 3. .

발 의 자: 최인순、정선희、유승용
차인영、이순우 의원(5인)

1.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동**”을 “**같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에 따른**”을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부모가족지원**을”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로, “**다음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대한 상담 및**”을 “**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5. 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6. 한부모가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7. 위기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
8.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전단 중 “제7조”를 “제7조의”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u>동</u>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2. ----- ----- -- <u>같은</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u>수립·시행할 수 있다.</u>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 -- <u>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u>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u><신 설></u>	1. <u>법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u>

1. ~ 3. (생략)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u>한부모가족지원</u>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u>다음각 호</u>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u>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를 위한 홍보사업</u> 2. <u>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u> <신설> 3. <u>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u> <신설> <신설> <신설> <신설>	<u>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u>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제6조(지원사업) ① ----- <u>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u> ----- ----- <u>다음 각 호</u>-----. 1. <u>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u> 2. <u>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u> 3. <u>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u> 4. ----- --- <u>대한</u> --- 5. <u>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u> 6. <u>한부모가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u> 7. <u>위기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u> 8. <u>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u>
--	---

<u>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u> <u><신 설></u> ②·③ (생 략)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 상자가 <u>제7조</u>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 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u><단서조항 삭제, 2018.03.29.></u> <u><신 설></u> <u>제9조</u> (생 략)	<u><삭 제></u> <u>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 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u>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환수조치) ----- ----- <u>제7조의</u> ----- ----- ----- ----- -----. <u><후단 삭제></u> <u>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 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u> <u>제10조</u> (현행 제9조와 같음)
---	--